
**2013년도 1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지원(융자)사업
세부시행계획**

2012. 12.

한국장학재단

'13년 1학기 농어촌융자 주요 변경사항 및 일정

1. 주요 변경사항

구 분	이 전('12-2학기)	이 후('13-1학기)	변경사유
FAX서버 연계 (P.6)	증빙 서류 오프라인 제출	증빙 서류 온라인 제출	녹색금융 실현
제출 서류 대학접수 폐지 (P.6)	학생→대학→재단	학생→재단	대학 부담경감
주민등록등본 정보 연계	학생 오프라인 제출	전산 연계	고객편의 제공

2. 일 정

구 분	1차 (재학생, 신입생군)	2차 (신입생군)	비 고
신청기간	'13. 1. 3 ~ 1. 11 ※특별추천 기간 ('13. 1 .14 ~ 1. 18)	'13. 2. 25 ~ 3. 8	재단 홈페이지
융자실행	'13. 2. 18 ~ 2. 22	'13. 4. 8 ~ 4. 12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2013년도 1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지원(융자)사업 세부시행계획

< 차 례 >

I . 사업개요	1
1. 목적		
2. 지원방향		
3. 지원계획		
II . 사업내용	1
1. 융자대상(신청자격)		
2. 융자대상자 선정		
3. 융자금액		
4. 융자조건		
5. 융자가능횟수		
6. 융자제한		
7. 융자상환		
III . 학자금융자	7
1. 주요일정		
2. 신청방법(학생)		
3. 대학추천		
4. 지원방향		
5. 선정방법		
6. 융자지급		
7. 농어촌학자금 관리 책무		
8. 신입생군 융자		
IV . 학자금 융자 반환 및 상환 관리 등	14
1. 반환 및 상환방법		
2. 융자금 상환유예		
3. 사후관리(연체자 관리 및 신용유의정보 등록)		

I

사업 개요

1. 목 적

- 농어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2. 지원 방향

- 이용학생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용자재원 지속적 확충
- 학자금은 학기별로 등록금 범위내에서 신청액 전액을 용자 지원
-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용자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
-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 자녀를 우선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문화 가정 등 취약농어가 자녀와 다자녀 가구 자녀 및 장애우 학생 우선지원
- 연체율 감소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 병행

3. 지원 계획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합 계	'13. 1학기 (1차: 재학생, 신입생군)	'13. 1학기 (2차: 신입생군)	'13. 2학기
지원 인원	31,500	17,152	1,748	12,600
지원 금액	94,500	51,455	5,245	37,800

* 실제 지원인원 및 금액은 신청현황, 상환금액 등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함

* 1학기, 2학기 인원/금액 비율은 신입생 수시, 수능 비율 반영

II

사업내용

1. 용자대상(신청자격)

(1) 신청대상자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및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중 다음 대학(학부)에 재학(복학포함) 및 입학예정(신입, 편입학, 재입학 포함)인 학생으로서 아래와 (2)의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 학부모(보호자)의 기준

가. 부모

나. 부모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의 경우 다음의 순서에 의함

- ① 조부모
- ② 형제자매
- ③ 기타(만 30세 이상의 제3자, 친척, 교수, 은사 등)

다. 단, 기혼자의 경우, 보호자는 반드시 배우자이며, 본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음

※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은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 여부와 관계 없음

- 다음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의 **대학생(학부생)**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원격대학 포함)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및 한국과학기술원, 농협대학 등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 단,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외국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기 준	주 요 내 용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 ※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학생 학생의 경우 적용 제외
이수학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학생, 졸업학년 학생 및 장애우 학생의 경우 적용 제외

- * 직전학기의 기준은 대학 운영원칙에 의거 정규학기 및 부분학기(계절학기 포함)를 기준으로 한학기의 성적산출이 가능한 경우
- * 학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점을 포기하더라도, 신청학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수학점 및 성적 입력
- * 직전학기 성적확인이 곤란한 경우(성적처리 전, 교환학생 등)에는 이용 가능한 최근학기 성적 적용

2. 용자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 시 다음 순위를 적용하며, 동일 순위 내에서는 재학생은 성적 우수자를 우선하여 선정하며 신입생군(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은 농어촌 거주기간 순으로 선정

《 순위별 적용대상자 》

순 위	적 용 대 상 자
필수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상
1순위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다문화 가정 등 취약농어가 자녀와 장애우 학생 및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 농어업인 대학생(학부모가 농어촌거주나 농어업 종사와 무관)
2순위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이상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농어업 미종사)
3순위	○ 특별추천자

○ 선정방법

- 학기별로 전 용자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청자격 심사와 구비서류 확인을 거쳐 상기 순위에 의거 용자대상자로 선정

○ 특별추천

- 각 대학은 직전학기에 12학점 미만 취득자와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미만인 학생 중에서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학 내 심사를 통하여 추천 가능
- 추천방법 : 특별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을 관리자 포털에 입력
- 추천횟수 : 대학의 자체심사를 통해 학교별 학기당 최대 3명까지 가능
(단, 재학기간 중 개인별 2회까지만 허용)

※ 일반·든든학자금 특별추천 횟수와 합산하지 않은 농어촌학자금만의 특별 추천 횟수를 의미

- 대학은 특별추천자에 대하여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대학 내부 결재권자의 결재 후 보관하고 사후확인에 대비하여야 하며 재단 대출심사 위원회에서 특별추천자 심의 가능

- 추천사유 예시 : 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자녀로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 아르바이트 등으로 인해 성적이 미흡한 경우, ② 과거학기 성적을 고려하였을 때, 직전학기만 예외적으로 성적이 미흡하여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3. 용자 금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용자금 대상에서 제외
(단, 생활비는 한국장학재단의 일반·든든 생활비대출에서 별도로 신청이 가능함)
 - 타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에서 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금액을 용자금으로 산정하여 신청
 - 용자 신청 최소 금액은 10만원 이상

4. 용자 조건 : 무이자

5. 용자 가능 횟수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까지 용자 가능
 - 전문대학은 4~6회(2년제 4학기, 3년제 6학기), 일반대학은 8회(4년제 8학기) 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의학계열·약학계열·건축학과 등 정규학기 수가 8학기 이상인 학과는 전체 정규학기 수만큼 용자 가능
 - 신입생군 학생(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이 기존에 놓어준 학자금 용자를 받았을 경우, 현재 재학 중인 대학의 정규학기 수에서 기존에 용자받은 학기 수를 차감한 학기수를 '용자가능 횟수'로 인정
 - ※ 단, 기존 대학(교)를 졸업한 후 동급대학으로 재입학(신입학 포함) 시에는 지원 및 상환 연장 불가
 - 예) 전문대학(2년제)에서 총 2회 놓어준용자를 받은 학생이 졸업 후 4년제 대학 3학년 1학기로 편입했을 경우, 용자 가능 학기 수
 - ☞ 8 (4년제 정규학기 수) - 2 (기존 대학 용자 횟수) = 6 (용자가능 횟수)
 - 용자이용 학생이 당해 학기에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 및 이중수혜 등의 사유로 용자금을 반환한 경우에도 당해 학기는 용자 학기 수에 포함

6. 용자 제한

(1) 제한 대상

- 용자신청 및 실행일 현재 농어촌학자금 포함 재단의 학자금대출을 연체중인 자
- 재단의 학자금대출신용보증계정에 의해 취급된 보증부대출 연체자 포함
- 구상채무보유자 및 일반상환학자금대출에 대하여 연체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계좌를 보유한 자
- 신용도판단정보 규제중인 것으로 확인된 자
- 신용도판단정보 해제기록정보 보유자
- 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한 자
- 대학을 미등록하고 해당학기 등록금대출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 기용자금과 신규등록금의 차액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 학자금 이증지원자로 확인된 자

<관련 근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중복 지원의 방지)

제50조의2(중복 지원의 방지)

-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재단은 이 법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학자금 무상지급이 다른 학자금에 관한 지원과 중복하여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학자금 이증지원의 범위>

구분	종류
학자금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등학자금(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WEST 포함),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용자 ■ 타기관 학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I, II 유형, 대통령과학장학금, 대통령드림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국가연구장학금(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전문대학성적우수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등 ■ 정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민간장학재단, 기업, 대학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 군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 장학금 등
이증지원해당 학자금지원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학자금지원 업무수탁기관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으로서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기타 학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의 직장 등으로부터의 기관 임직원 자녀 학비 지원 - 부모 또는 후견인의 직장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학비 지원제도」에 의해 등록금을 지원 받는 경우
이중지원 예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장학금 등의 대가성 장학금 및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 * 생활비대출은 농어촌학자금 이중지원 범위에서 제외
- *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에서 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차액 지원

(2) 부당 수혜자에 대한 조치

○ 신청자격 및 증명서를 허위 또는 위·변조시 다음의 제재조치

부당수혜 횟수	조치사항
1회	다음 1학기 신청자격 제한 (지원학기 수=정규학기 수-1)
2회	다음 2학기 신청자격 제한 (지원학기 수=정규학기 수-2)
3회	향후 전체학기 신청자격 제한

7. 용자 상환

(1) 졸업 또는 수료(졸업학점 이수) 후, 거치 기간(2년) 뒤(2년경과 익월부터), 1학기분을 1년 단위로 상환

구 분		상환개시 시점
졸업, 수료	2월 졸업	졸업 또는 수료 후 2년 뒤 3월부터
	8월 졸업	졸업 또는 수료 후 2년 뒤 9월부터
자퇴, 제적	전년도 9월~당해년도 2월	발생일 기준으로 거치기간 없이 도래하는 3월부터
	당해년도 3월~8월	발생일 기준으로 거치기간 없이 도래하는 9월부터

※ 단, 2010년도 이전 졸업자는 거치기간 1년, 2010년 이후 졸업자부터 거치기간 2년

※ 학생은 졸업 등의 학적변동사항을 재단에 고지(재단 홈페이지 접수)

(2) 상환방법은 원금균등분할 방식이고, 납입주기는 월별로 매월 27일까지 납부 단, 12년 1학기 이전 지로자동이체 납부자는 익월 12일에 추가 인출하며, 용자받은 자는 언제든지 조기상환 가능

III

학자금 용자

1. 주요 일정

○ 1차 신청 : 대학생 전체 대상 (재학생, 신입생군 전체)

세 부 내 용		일 정	비 고									
○ 농어촌학자금용자 본 신청 (1차)		'13.01.03 ~ '13.01.11	학생									
<table border="1"> <thead> <tr> <th>기본자격</th> <th>이수학점 및 성적</th> </tr> </thead> <tbody> <tr> <td> <table border="1"> <tr> <td>원 칙</td> <td>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td> </tr> <tr> <td>추 가</td> <td>거주지 주소가 읍면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제출</td> </tr> </table></td></tr></tbody> </table>	기본자격			이수학점 및 성적	<table border="1"> <tr> <td>원 칙</td> <td>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td> </tr> <tr> <td>추 가</td> <td>거주지 주소가 읍면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제출</td> </tr> </table>	원 칙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추 가	거주지 주소가 읍면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제출	<table border="1"> <tr> <td>이수학점</td> <td>직전학기 12학점 이상 - 예외 : 졸업학년, 장애우, 신/편입생, 재입학생</td> </tr> <tr> <td>성 적</td> <td>직전학기 70점 이상(100점 환산) - 예외 : 신/편입생, 재입학생</td> </tr> </table>	이수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 예외 : 졸업학년, 장애우, 신/편입생, 재입학생
기본자격	이수학점 및 성적											
<table border="1"> <tr> <td>원 칙</td> <td>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td> </tr> <tr> <td>추 가</td> <td>거주지 주소가 읍면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제출</td> </tr> </table>	원 칙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추 가	거주지 주소가 읍면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제출								
원 칙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추 가	거주지 주소가 읍면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제출											
이수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 예외 : 졸업학년, 장애우, 신/편입생, 재입학생											
성 적	직전학기 70점 이상(100점 환산) - 예외 : 신/편입생, 재입학생											

○ 대학 특별추천 - 대학에서 특별추천자 전산 입력		'13.01.14 ~ '13.01.18	대학																
○ 학생 서류제출 (FAX: 02-3419-8850)																			
	필수제출 서류	추가서류(해당자만)		--	--		① 보호자 가족관계 증명서 - 학생 신청시 지정한 보호자의 가족 관계증명서를 제출	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거주지주소가 읍면지역이 아닌 경우 ② 농어업 종사 증빙서류 - 농지원부 및 어선원부가 없는 경우 - 어업허가/면허증, 영농·어업종사확인서 ③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 ④ 기타 해당서류 등 - 가출신고접수증 등 관련 추가서류			학생								
※ (주의) 서류제출기한 미준수시 용자심사 제외 ※ 주민등록등본정보, 농어촌지역 거주정보 확인을 위한 거주이력정보, 농지원부 및 어선원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는 전산자료 활용으로 제출이 불요하며 신청 학생은 용자 신청 시 위 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용자대상자 서류확인 및 심사 (1차) - 용자대상자 적격 유무 확인 - 거주지역·기간, 이수학점, 성적, 농·어업 종사여부 등		'13.01.21 ~ '13.02.15	재단																
	구 분	내 용		--------	--		★필수요건★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1순위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학생본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 다자녀(3자녀이상) 가정 및 장애우 학생		2순위	- 농어촌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3순위	- 특별추천자		
* 특별추천자 해당시, 1, 2순위자도 3순위 적용 * 동일순위내 심사기준 : 재학생은 성적, 신입생군은 거주기간 순																			
○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 업로드 (1차)		'13.02.05까지	대학																
○ 용자대상자 최종확정 및 용자실행 (1차) - 최종 용자대상자 선정 및 용자대상금액 대학 송금		'13.02.18 ~ '13.02.22	재단																

○ 2차 신청 : 신입생군 대상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에 한함)

세 부 내 용	일 정	비 고
○ 농어촌학자금융자 본 신청 (2차, ※신입생군만 해당)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만 신청가능	'13.02.25 ~ '13.03.08	학생
○ 학생 서류제출 (FAX: 02-3419-8850)	'13.03.11 ~ '13.03.15	
○ 용자대상자 서류확인 및 심사 (2차) - 용자대상자 적격 유무 확인 - 거주지역·기간, 이수학점, 성적, 농·어업 종사여부 등	'13.03.18 ~ '13.04.05	재단
○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 업로드 (2차)	'13.03.29까지	대학
○ 용자대상자 최종확정 및 용자실행 (2차) - 최종 용자대상자 선정 및 용자대상금액 대학 송금	'13.04.08 ~ '13.04.12	재단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전신청자(정규 대출신청기간 이전 예약신청자)도 위 대출 기간 중 실행 가능

※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 업로드 기간 2일전까지 반드시 입력하여야 업로드 오류 등을 해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용자실행 가능

※ 제출서류 미비,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 업로드 기한 미준수에 대한 책임은 제출 또는 업로드 주체 본인 또는 대학에 있음

2. 신청 방법(학생)

(1) 준비단계

○ 공인인증서 준비(본인확인용도, 기보유자는 재발급 불필요)

-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이하 “제휴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 제휴은행 : 외환,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스탠다드차타드, 전북, 하나, 제주, 우체국

(2) 신청절차

○ 회원가입 → 로그인 → 신청정보입력 → 신청 시 농어촌학자금융자 선택 → 약관동의 → 신청완료 → 서류제출(Fax)

(3) 서류제출

○ FAX 접수 (02-3419-8850) - '마감기한 엄수'

· 1차 신청자(전체 대상) : '13.01.14~01.18

· 2차 신청자(신입생군) : '13.03.11~03.15

구 분	서 류	비 고
공 통	① 보호자 가족관계증명서	
추 가 서 류 (해당자에 한해 제출)	②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거주지주소가 '읍면'지역이 아닌 경우
	③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①~③중 택일
	① 농지원부 및 어선원부	전산조회
	②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등	① 미 보유자이나,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③ 영농·어업종사자확인서	①~② 미 보유자이나,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읍·면·동장 등 확인)
	④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전산조회
	⑤ 장애인 증명서	
	⑥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자활근로확인서, 본인 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차상위본인경감 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⑦ 가출신고접수증 등	해당자에 한함 (부모가 생존하나 행방불명 등의 경우)	

※ 추가서류는 해당자만 제출

※ 대학생 본인 종사 기준 신청 시, 본인기준 서류제출

※ 거주지주소가 읍면이 아닌 경우, 거주지기준(경작지기준 아님)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제출

(4) 신청 시 유의사항

-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 로그인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신청 정보 및 용자거래약정 동의 등의 관련사항을 빠짐없이 모두 입력

※ '신청완료'는 재단 여신거래약관 및 농어촌융자 관련 약관 등을 포함한 모든 내용에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심사 및 학자금융자를 위한 본인 또는 보호자의 관련 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심사기간 이후 신청 입력내용 오류 또는 누락 시 수정불가
- 서류접수 기간 내 서류를 미 제출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3. 대학 정보 입력 및 특별 추천

(1) 학사정보, 수납원장 업로드

구분	1차 용자 업로드 기간	2차 용자 업로드 기간	주체	제출처
학사정보 업로드	13.02.05까지	13.03.29까지	대학	관리자포털
수납원장 업로드				

※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 업로드 기한 미준수로 인한 용자 제한 관련 책임은 해당 대학에 있음

※ 수납원장 등록

○ 개인 수납원장 등록

- 개인별 등록금액이 확정되면 수납원장 등록
- 대학은 수납원장에 학생정보, 등록금정보, 장학금정보 등을 기입

○ 대학 수납계좌 등록

- 농어촌학자금융 학교 수납계좌 등록 필요
- 신규 등록 및 계좌변경 시 공문,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별도 발송

(2) 특별추천

- 대학은 성적 또는 학점 요건이 미충족되는 학생들 중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과거 성적 등을 고려하였을 때에 정상참작이 가능한 경우 등 대학 자체기준 등을 반영하여 특별추천 가능

4. 지원 순위

구분	내용
★필수요건★	- (보호자 자격으로 신청 시)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 (학생 본인 자격으로 신청 시)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1순위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학생본인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우 학생, 차상위계층, 다문화 및 다자녀(3자녀이상) 가정
2순위	- 농어촌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단순거주)
3순위	- 특별추천자

- * 농어업 종사의 기준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의한 기준을 준용하되, 면적 또는 연간판매액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농지원부 및 어선원부 등록여부 또는 영농종사자·어업종사자 확인서 등을 기준으로 판단
- * 특별추천자 해당 시, 1, 2순위자도 3순위 적용
- * 동일 순위 내 심사기준 : 재학생은 성적, 신입생군은 거주기간 순

5. 선정 방법

(1) 서류 확인 및 심사

- 신청자 학생 본인이 입력한 정보와 그에 따른 전산자료, 제출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 대학에서 학사정보와 수납원장을 업로드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

(2) 대출심사위원회

- 농어촌학자금 신청자의 실질적 가구구성이 서류상 상이하여 가구과약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을 심의
- 농어촌학자금 특별추천자를 심의
-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름

6. 용자 실행

- 재단에서 신청학생 소속대학(교) 등록수납계좌로 일괄 송금 후 소속대학은 등록금으로 대체(재단→학교→등록금대체)
- 지급시기 : 용자 지원 확정 발표 후 즉시

협조요청
용자금 송금이 지연될 경우, 신청학생에 대하여 등록금 납입기간을 유예하여 주시기 바람

7. 농어촌학자금 관리 책무

(1) 소속대학(교)의 책무

- 농어촌학자금은 당해 신청학생이 소속된 대학(교)가 등록금으로 대체
 - 등록금 대체 후 수혜자(학생)에게 대체 사실 확인서를 배부
- 농어촌학자금 수혜 중지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결과를 재단으로 즉시 통지하고 해당금액을 상환

- 당해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수혜된 금액, 교내장학금 등은 당 용자에서 차감하여 즉시 상환조치 단, 학생이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장학금은 이중지원 대상에서 제외
- 휴학 또는 자퇴한 학생 등에 대하여 재단에 즉시 반환 처리
- 신청학생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채무불이행자에 등록된 자는 재단에 즉시 통지
- 기타 농어촌학자금 수혜를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재단에 즉시 보고
- 용자실행 후 상기 신청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용자금을 즉시 회수하고, 제재조치
- 학자금 수혜자의 학적변동시 상환에 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관리자포털을 통하여 변동사항을 매학기 고지
- 변동사항 고지는 상시 가능하나, 재단은 관리를 위해 대학에 2월 졸업자는 전년도 12월부터, 8월 졸업자는 6월부터 요청 예정(정확한 시기는 시기별 별도 공지)

(2) 수혜자(학생)의 책무

- 학자금 수혜금액 확인 및 이중수혜시 반환
 - 농어촌학자금 수혜자는 소속된 대학(교)가 등록금으로 대체한 사실 확인
 - 각종 장학금 또는 용자금이 이중지원이 될 경우 해당 장학금 또는 용자금을 농어촌학자금에서 차감하여 재단으로 반환처리
 - 용자받은 학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용자금 전액 또는 일부를 즉시 상환
 - 기타 농어촌학자금 수혜를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용자금 전액 상환
 - 신입생의 경우 최후등록이 확인되지 않고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후 반환이 완료될 때까지 용자제한
- 상환스케줄 확인 및 학적 변동사항 고지
 -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휴학 또는 자퇴할 경우 거치기간 없이 다가오는 3월이나 9월부터 상환개시
 - 3월 상환개시 : 제적 및 자퇴의 발생일이 전년도 9월~당해 연도 2월인자
 - 9월 상환개시 : 제적 및 자퇴의 발생일이 당해 연도 3월~8월인자
 - 학적이 대출당시 입력된 졸업예정일에서 변동될 경우에는 학적변동(휴학·편입, 자퇴, 제적 등) 내용을 재단에 고지하여 상환 시작일을 변경

8. 신입생군(신입생, 재입학생, 편입학생) 용자

(1) 기등록자 용자

- 대학(교)에 선등록한 신입생군에게 놓어촌학자금 용자 가능
- 기등록자 용자금은 용자신청자의 개인계좌가 아닌 대학계좌로 지급
 - 수납원장에 등록예치금이 포함되어 있고 대출신청자가 동 금액을 포함하여 기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등록예치금까지 포함하여 대학계좌로 지급
- 등록금 중 일부만 장학금으로 지급받은 용자신청자는 등록금과 장학금의 차액만큼 등록금용자 가능
- 재단은 대학(교)이 관리자포털에 입력한 학적정보를 바탕으로 기등록 여부 판단
- 대학(교)은 기등록자 관련 정보를 정확히 업로드 및 업데이트 필요

(2) 추가합격 후 등록대학 변경 시

- 최초등록 대학담당자가 타대학 합격통지서 또는 등록금고지서를 확인 후 해당 학생의 동의서를 징구 받고 이동예정 대학계좌로 직접 송금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학생지급
- 추가합격 대학(학과) 등록금 > 최초등록 대학(학과) 등록금
 - 차액분은 본인 부담하여 등록
- 추가합격 대학(학과) 등록금 < 최초등록 대학(학과) 등록금
 - 추가합격 대학 등록 후 차액은 상환 처리
- 최종등록 대학(교) : 신입생군 최종등록자 업로드 처리
 - 신입생군 추가합격으로 인하여 학적변동이 많으므로 반드시 신입생군 최종등록자 업로드 처리 필수

신입생 최종등록자 업로드

신입생 최종등록자 업로드 미반영시, 해당대학 학생이 용자제한 대상자로 분류되어 추후대출이 불가하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3) 용자 실행 후 미등록시

- 용자 실행 후 미등록 시 용자금을 전액 상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용자제한자로 분류

1. 반환 및 상환방법

(1) 학자금 용자 반환

- 반환사유 발생 즉시, 소속대학(교) 및 학생은 재단에 반환 처리
 - **소속대학(교)** : 담당부서는 재학중인 용자 수혜자 중 반환사유(이중수혜, 초과수혜 등)가 발생하여 수혜 학자금을 반환(일부 또는 전액)할 경우 관리자포털에서 가상계좌 생성 후 입금 처리 및 재단의 학자금지원시스템에 반환사유, 반환금 등을 입력(서류 등 일체 미제출)
 - **학생** : 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자동이체 계좌 등록 또는 일회성 가상계좌 생성하여 반환

(2) 학자금 용자 상환

- 졸업 전 학생은 홈페이지에서 상환계획서를 작성 후 재단 승인 필요
- 졸업 등 학적 고지(자퇴·제적 포함)
 - 2월 졸업자는 전년도 12월부터 4월 이전, 8월 졸업자는 6월부터 작성가능(정확한 시기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 ※ 학생이 상환계획서를 기간 내에 미작성하였을 경우, 재단은 상환스케줄을 상환기간 설정에 의거하여 생성
 - 재단은 대학이 입력한 학적정보를 바탕으로 학생의 졸업유무를 판단하고 대학은 매학기 해당대상자의 학적정보 변동사항을 확인 후 수정 협조 필수
 - 학생은 졸업 등 학적을 재확인하고 수정하여 재단에 고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 상환기간 설정
 - 학자금 용자를 받은 자가 졸업 또는 수료 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날부터 학자금의 용자를 받은 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의 범위 안에서 1학기 분을 1년 이내 상환 원칙
 - 학생이 놓어준학자금을 수혜 받은 과거 채권부터 순차적으로 상환스케줄 생성
 - 최초대학(교) 졸업 또는 수료 후 부여되는 거치기간은 최대 2년 적용
 - '12년 이후 졸업자부터 월별균등분할 상환이 적용되며, 이전의 졸업자는 지정한 상환방법(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별, 일시납) 유지

- 납부 기한 : 매월 27일까지
- 상환 개시일
 - 졸업자
 - 2월 졸업자 : 졸업 후 2년 뒤 3월 상환개시
 - 8월 졸업자 : 졸업 후 2년 뒤 9월 상환개시
 - 자퇴 및 제적자
 - 발생일 기준으로 거치 없이 도래하는 3월 혹은 9월부터 상환개시
 - ※ "농어촌학자금 상환에서 졸업"이란 해당 학교 학제의 인정학기를 수료하거나 졸업학점 취득 시 졸업으로 간주되며, 단, 기타졸업요건의 미비(졸업시험, 어학점수, 자격증 미취득, 졸업논문 등)의 사유가 존재하여도 졸업으로 간주
- 상환납부방법
 - 자동이체 계좌 : 재단 홈페이지에서 본인통장 등록 후 이용 가능(제휴은행 가능)
 - 일회성 가상계좌 : 재단 홈페이지에서 생성 후 이용
 - 고유 가상계좌 : 개인 고유로 부여된 고유가상계좌가 존재하는 경우 이용
 - 지로 자동이체 : 시중은행(재단과 협약된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이용 가능하며 상환처리시까지 최소 영업일 3일 이상이 소요
 - 지로 자동이체는 익월 12일에 추가 인출(부분 인출 가능)
 - 인터넷 자동이체 해당월 27일, 상환금액 부족시 신청시 지로자동이체신청 내용은 자동 변경되고 지로자동이체로 재변경 불가
- 상환납부 방법 변경
 - 기지정된 상환방법 중 분기별, 반기별, 연별, 일시납일 경우, 월별균등상환 방식으로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 약정내용을 변경 가능
 - 단, 신청일자 기준 연체가 아닐 경우만 가능하며 월별균등상환방식에서 분기별, 반기별, 연별, 일시납으로는 변경 불가
- 상환 충당 순서
 - 학자금 대출을 동일 학교에서 수혜한 경우와 타 학교에 편입하여 수혜한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최초 받은 학자금을 우선 상환
- 학적변동 정보 및 개인정보 관련하여 학생은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고지, 대학은 매학기 졸업대상자 명단을 재단에 신고
 - 학적변동은 전체사업의 재정건전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정보 입력

- 거주지, 연락처 등 개인정보 변경사항은 채무자 본인이 신고하여야 하며, 재단 홈페이지에서 변경가능

2. 용자금 상환유예

(1) 거치기간연장

- '10년 졸업자부터 거치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11년 상환도래자('10년 졸업자)부터 졸업 또는 수료 후 2년이 경과한 날의 익월부터 상환개시
 - '10년도 이전(~'09.12월) 졸업자는 거치기간 1년으로 기존과 동일
 - 자퇴 또는 제적 등으로 인한 자는 거치기간 없이 상환 원칙 동일
- 신청방법
 - 대상자는 재단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인터넷 상시 신청 가능

(2) 상환기간연장 : 거치기간을 제외한 상환기간의 연장은 그 해당사유에 따라 상환연장 신청서와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재단은 접수된 서류를 검토한 후 연장 승인 가능

- ※ 상환기간연장 해당 범위: 재해, 질병, 병역, 상급학교 진학, 외국 유학 등
- ※ 단, 상환기간연장 신청일자 기준 연체가 아닐 경우만 가능(추가)

(가) 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 1항 및 제18조(현역의 복무) 2항에 의거 징집 소집되는 경우 기간을 연장 단, 의무복무기간이 변경되면 변경된 의무기간으로 적용(관련서류 : 상환연장신청서, 입영통지서, 병적증명서 및 복무확인서)

- ※ 현역병 의무 복무기간만 적용되며 군휴학 기간은 최대 3년
- ※ 졸업(수료) 후 장교, 부사관 및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군 복무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다만, 유급지원병 등의 상환연장은 현역(육군) 의무기간 동안만 연장 가능

(나) 상급학교 진학(관련서류 : 상환연장신청서, 재학증명서, 4대보험가입여부확인서)

- 상급학교의 진학범위는 당해 학제보다 상급학교 진학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규학기 수 기간 동안 연장 가능
- ※ 상급학교 진학으로 인한 연장은 미취업 상태일 것
- ※ 상급학교 진학이란 전문학사 취득 후 학사로 진학한 경우와 학사 취득후 석·박사과정으로 진학한 경우를 말함

(다) 재입학(관련서류 : 상환연장신청서, 재학증명서, 학적부)

- 재입학의 범위는 기존수혜 학생이 졸업전 해당 대학교 또는 타 학교로 재입학하는 경우, 기존 대학을 졸업 후 동급학교로 재입학(신입학 포함)한 경우에는 제외

(라) 유학(관련서류 : 상환연장신청서, 재학증명서(영문) 혹은 입학허가서(영문))

- 외국에 유학하는 범위는 국외수학기관 중에 정규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학생에 한하여 정규학기 수 기간 동안 연장 단, 어학연수의 경우 학위 즉, 학사, 석사, 박사를 취득하기 위하여 해당학교가 시행하는 어학연수의 경우에는 연장을 인정 하되, 단순 어학연수는 상환연장 대상에서 제외

※ 상급학교에 유학하였을 경우만 연장가능

(마) 휴학한 경우(관련서류 : 상환연장신청서, 휴학증명서)

- 학적변동신고를 통한 휴학기간(최대 2년)도 연장가능 단, 군복무로 인한 휴학 및 상급학교 진학으로 인한 연장은 상기간에 미포함하며, 부득이하게 상기 휴학 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전 재단의 별도 승인 필요

(바) 사고 및 질병에 따른 연장(관련서류 : 상환연장신청서, 진단서)

- 병원치료 진단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중 일정유예기간(6개월)을 통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상환연장은 6개월 단위로 최대 4회 연장 가능

(사) 지체부자유자(관련서류 : 상환연장신청서, 장애인증명서 및 진단서 등)

- 최초 학자금융자 수혜일자 이후 발생한 장애신체 등급에 따라 유예기간(1년) 준 후 일정기간이 경과함에도 불구하고 상환의 능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최대 2회 가능(장애인복지법률에 의거 장애인이라 함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부자유자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1~5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음)

(아) 재난, 재해(관련서류 : 상환연장신청서, 재해확인서)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자중 극심한 피해로 직접적인 재산상의 손실이 있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재난극복기간 연장 가능

(자) 징역 또는 수감자(관련서류 : 상환연장신청서, 판결문 등)

- 상환대상자가 징역 또는 수감 중인 자는 판결문을 근거로 연장할 수 있으며, 학부모(법정대리인)의 가정형편 등 상환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환기간을 복역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 가능

(차) 형법(관련서류 : 상환연장신청서, 판결문 사본 등)

- 형사 처벌로 인하여 징역 또는 금고로 복역 중인 경우에는 형의 복역기간에 따라 연장이

가능 단, 학부모(법정대리인)의 가정형편 등 상환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환기간을 연장

○ 유기 : 3개월 이상 형을 받은 경우(단, 형의 증가시에는 25년까지)

※ 구류, 벌금 및 과태료 미납 등으로 인한 구속 등은 연장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카) 면제(관련서류 : 상환면제신청서, 사망자기본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 사망자 : 상환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자 기본증명서 및 행정안전부 거주 여부 확인 자료를 근거로 면제처리 가능

○ 장애인 : 장애 1급으로써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는 면제 처리 단, 학자금융자 수혜 받을 당시 장애인일 경우에는 제외

3. 사후관리(연체자 관리 및 신용유의정보 등록)

(1) 연체 개월별 관리

연체기간	발송종류	대 상	비 고
1개월~3개월	SMS 발송	채무자	상환촉구 및 채무불이행거래자 제재
4개월~7개월	연체정리안내 통지문		
8개월이상	신용유의정보 등록예정 통지문		
10개월이후	연체정리 및 신용유의정보등록 통지문		
10개월이후~상환만기	최고장 발송		
상환만기 도래 (시효도래 3개월내)	소송제기 (독촉절차포함)		

* 연체자란 1개월 이상 상환의무를 행하지 아니한 자를 말함

* 1개월~10개월까지 연체자는 매월 개별 SMS 발송

(2) 신용유의정보 등록

○ 채무불이행자가 발생한 때에는 신용유의정보 등록 사유서를 명시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등록 사유가 발생한 채무불이행자에게 이에 대한 신용유의정보 등록예정을 통보하고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 및 이용자 등에게 제공·등록

○ 신용유의정보 등록 예외

- 대상자 : 상환계획서 생성시 학적확인 지연에 따라 상환기간 경과자로 파악되어 채단에서 승인하는 경우 및 채무자의 자퇴·제적 등 학적의 비정상적인

소멸로 인한 학적변동에 한함

- 재단이 학적현황을 파악하고 대상자에게 통지문을 발송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의 상환기간(신용유의정보등록 해소를 위한 최소기간)을 부여
 - ※ 단, 이미 연체기간이 신용유의정보등록 대상인 10개월 이후인 경우도 포함
- 또한, 해당 대상자는 그 기간(신용유의정보등록 해소를 위한 최소기간, 3개월)의 마지막 날(통지문 발송시점 3개월 해당 월 연체기산일인 27일)로부터 10개월 전 시기를 최초연체 발생일로 재산정하고, 이를 신용유의정보 등록 사유 발생일로 신용유의정보를 등록

(3) 소재불명(연락불능)자의 소재파악 방법

- 주관부처 및 행정안전부를 통한 상환자(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주소 조회
- 주민등록등(초)본을 청구 또는 열람하여 이동 주소지 추적
- 본적지 파악이 가능한 경우 부모 또는 친인척이 본적지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소재지 확인
- 개인신용정보 조회를 이용하여 카드사 카드소유여부 확인 후 은행협조 요청
- 법정대리인에게 소재파악 요청

【참고자료】 농어업인 및 농어촌지역의 기준

농어업인의 기준

- ☞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의한 기준
- 법 제3조(정의) 제2호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농업인 :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나. 어업인 :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이나 임대 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법 제3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어촌지역의 기준

-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조 및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440 ('09.12.31)호에서 정한 지역
- 읍·면의 지역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 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 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별첨1] 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

[별첨2]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별첨3]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별첨4]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약정서

[별첨5]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및조회동의서

[별첨6] 반환등록금상환위임동의서

[별첨7] 등록금반환금액의이동예정대학등록위임동의서

[별첨8] 등록금반환금액이용에관한서약서

[별첨9] 신청인서약서. 끝.

[별첨1] 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이 여신거래기본약관 (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합니다)과 거래처 (이하 “채무자”라 하며, 차주를 포함합니다)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재단은 이 약관을 본사 및 홈페이지에 비치·게시하고, 채무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취급하는 학자금대출에 관련된 재단과 개인인 채무자 사이의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제2조(이자 등과 지연배상금) ①이자·보증료·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이라고 합니다)의 율·계산방법·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재단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해당사항을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이자 등의 율은 거래계약 시에 채무자가 다음의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재단이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재단이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③제2항 제1호를 선택한 경우에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재단은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인하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 경우 변경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재단은 해소된 상황에 부합되도록 변경하여야 합니다.

④제2항 제2호를 선택한 경우에 이자 등의 율에 관한 재단의 인상·인하는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⑤채무자가 재단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재단이 정한 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사정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환거래에 있어서는 국제관례·상관습 등에 따릅니다.

⑥재단이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지급의 시기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이고 금융사정 및 그 밖의 여신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⑦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재단은 그 변경 기준일로부터 1개월간 본사 및 재단이 정하는 전자매체 등에 이를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정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⑧제3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초래되는 경우에, 채무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채무자가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재단에 대한 반환채무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지연배상금률 등을 적용합니다.

⑨제1항 및 제2항 제2호에 의한 이자 등의 율과 관련하여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는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단은 그 적정성 여부를 성실히 심사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 그 결과를 곧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3조(비용의 부담) ①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1. 채무자,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재단의 채권 또는 담보권의 행사나 보전[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해지도 포함) 등을 말함]
2.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3. 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②제1항에 의한 비용을 재단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합니다.

③재단은 채무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약정일자, 담보대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4조(자금의 용도 및 사용) 채무자는 여신신청 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재단과의 여신거래로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급보증 기타 재단으로부터 받은 신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5조(담보의 제공)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신용악화·담보가치의 감소 등의 사유로 재단의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재단의 청구에 의하여 곧 재단이 인정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제6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①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재단으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재단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지급보증거래에 있어서의 사전구상채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곧 이를 갚아야할 의무를 집니다.

1. 재단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담보재산이 존재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가압류를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
2.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제1호의 제 예치금 기타 재단에 대한 채권은 제외)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3.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이 있는 때
4.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5.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②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재단은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실제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또는 이행)할 의무를 집니다.

1.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③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재단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재단은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재단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재단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재단에 대한 수 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채납처분이 있는 때
3. 채무자의 제1항 제1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 실행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거나 가압류 통지가 발송되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제4조, 제13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5.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중 연체정보·대위변제대지급정보·부도정보·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로 등록된 때

④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 재단은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재단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재단에 대해 당해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제5조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담보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재단을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재단에 손해를 끼친 때, 기타 재단과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3. 보증인이 제1항에 해당하거나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당한 기간 내에 보증인을 교체하지 아니한 때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재단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재단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재단이 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이자·지연배상금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재단이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 때부터 부활됩니다.

제7조(기한전의 임의 상환)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미리 아무런 배상금 부담 없이,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단의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8조(일부변제와 충당) ①채무자가 변제를 할 경우에,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재단은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당 순서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②변제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변제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의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지정이 이미 연체된 채무를 제쳐놓고 기한미도래 채무에, 또는 무담보 채무를 제쳐놓고 유담보 채무에 충당하는 등 재단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일 때에는, 재단은 지체 없이 이익을 표시하고 재단이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9조(사고의 처리) ①채무자가 재단에 제출한 제 증서 등이 불가항력·사변·재해·수송도중의 사고

등 재단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손상·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 채무자는 재단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갚기로 하되, 채무자가 재단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재단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된 후 갚기로 합니다.

②채무자는 제1항의 분실·손상·멸실의 경우에 재단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단이 제3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증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제1항,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없이 이중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재단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④재단이 제 증서·신고서 등 서류의 인영·서명을, 채무자가 신고한 인감·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처리한 때에는, 그 서류나 도장에 관하여 위조·변조·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제10조(신고사항의 변경) 채무자가 이미 신고한 성명·주소·전화번호·인감·서명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 내용을 재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11조(자료의 성실 작성의무) 채무자는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재단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2조(통지의 효력) ①재단이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 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제공받은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②채무자가 제10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③재단이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13조(회보와 조사) ①채무자는 재단이 채권보전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부채현황, 채무자 및 보증인의 신용상태나 담보의 상황에 관하여, 지체없이 회보하며, 또 재단이 그에 관하여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채무자는 채무자 및 보증인의 신용상태나 담보의 상황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재단의 청구가 없더라도, 곧 재단 앞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4조(이행장소·준거법) ①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재단 본사로 합니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재단의 본점 또는 센터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 받은 본점 또는 센터를 그 이행장소로 합니다.

②채무자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터 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제15조(약관·부속약관 변경) ①재단이 이 약관을 변경하거나 부속약관을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재단은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본사 및 홈페이지에 변경 내용을 게시합니다.

-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경우 재단은 이를 서면, 전자우편 등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 전까지 개별통지 합니다. 다만, 기존 채무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 ③ 재단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채무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⑤ 재단은 약관을 본사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채무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16조(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 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재단과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재단의 본사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재단이 본점 또는 센터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점 또는 센터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별첨2]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과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재단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비대면·자동화된 방식으로 직접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2.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재단과 체결한 이 약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한다.
3. “전자적 장치”라 함은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를 말한다.
4.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공인인증서
나. 가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5.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6.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의하여 재단에 개별적인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7.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약관(개별약관을 포함한다) 또는 이용자가 거래지시한 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8. “영업일”이라 함은 통상 재단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날을 말한다.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되는 거래) 이 약관은 재단과 이용자 사이에 다음 각호의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대출 및 신용보증약정체결 등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된다.

1. 컴퓨터에 의한 거래
2. 전화기에 의한 거래
3. 기타 전자적 장치에 의한 거래

제4조(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대한 동의)①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재단과 별도의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대해 동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단순조회(대출잔액, 대출 원리금 납부내역 등)
- 2.기타 재단이 정하는 거래

제5조(접근매체의 관리)이용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 사용위임 또는 양도·담보 제공하거나 본인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6조(공인인증서 사용)이용자는 이 약관의 적용대상인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본인 대출 및 보증계좌에 대한 조회업무
- 2.ARS(자동응답서비스) 등과 같이 공인인증서의 설치·운용이 불가능한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경우
- 3.기타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승인하는 경우

제7조(이용시간)①이용자는 재단이 정한 시간 이내에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②이용시간은 재단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전 본사, 게시 가능하거나 기타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거래지시의 처리기준)①재단은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 등을 신고된 것과 대조하여 그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에 거래지시를 처리한다.

- ②이용자의 거래지시와 관련하여 재단이 수신한 전자문서는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본다.
-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지시 전자문서가 재단이 정한 시간내에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수신된 경우 재단은 전화 기타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진정한 거래지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나머지 전자문서를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
- ④재단은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출금계좌에서 대출 원리금을 인출할 때 지급청구서 없이 인출한다.
- ⑤이체지정일이 재단 휴무일로 정해질 때에는 익영업일에 거래를 처리한다.

제9조(거래의 제한)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의 당해 지시에 따른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 1.전자금융거래의 처리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출금자금이 미달하는 때.
- 2.입금 또는 출금계좌가 해지되었거나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되었을 때
- 3.이체일에 입금 또는 출금계좌의 잔액증명서가 발급되었을 때
- 4.출금계좌를 지정하여 계좌이체를 이용하기로 한 이용자가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 계좌이체 거래지

시를 할 때

5.법적 지급제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법령 위반 등으로 거래제공이 부적합하다고 재단이 인정했을 때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이체의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1.공인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공인인증서가 취소되었을 때

2.컴퓨터 또는 전화기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12개월 이상 이용실적이 없을 때

③재단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10조(거래지시의 철회)①이용자는 거래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자금융거래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거나 또는 재단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거래지시를 철회 할 수 있다.

②실시간 이체되는 거래 등 전자금융거래의 성질상 재단이 거래의 완료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거래지시 철회를 제한할 수 있다

③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출금계좌를 해지할 수 있다

④이용자의 사망·한정재산선고·금치선고나 이용자 또는 재단의 해산·합병·파산은 그 자체로는 거래지시를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재단의 권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거래내용의 확인)①재단은 거래의 처리결과를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컴퓨터 등 대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요청하는 거래내용을 해당 전자적 장치 및 대체 전자적 장치로도 즉시 확인을 해 주는 것이 곤란할 경우 재단은 해당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형태로 출력하여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이용자는 거래지시와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이용자는 거래지시와 재단의 처리결과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즉시 재단에 통지하여야 하며 재단은 통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고 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12조(오류의 정정)①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재단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단은 즉시 조사하여 이체자금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거나 출금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재단은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13조(사고·장애시의 처리)①이용자는 거래계좌에 관한 접근매체의 도난, 분실, 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재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재단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③제1항의 신고를 철회할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재단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재단은 통신장애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거래지시 된 전자금융거래가 처리 불가능할 경우 출금계좌로 입금처리하고 이용자의 신고된 연락처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재단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장애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손실부담 및 면책)①재단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금액과 시중은행 평균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보상한다. 다만, 부정이체 결과로 당해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액이 시중은행 평균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손실액을 보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한다.

1.천재지변, 전쟁, 테러 또는 재단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3.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③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재단은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써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제15조(거래기록의 보존)①재단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거래기록(조회거래는 제외한다)을 5년간 유지,보존하여야 한다.

1.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3.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4.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 변경에 관한 내용

5.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②재단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거래기록을 1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한다.

1.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거래에 관한 기록

2.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오류정정 요구 및 처리기록

제16조(거래기록·자료의 제공)①재단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단이 보존·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록·자료를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이용자가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거래기록·자료의 범위와 대상기간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록 및 기간으로 한다.

③이용자가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형태의 거래기록·자료(이하 “거래명세서”라 한다)를 제공할 것을 재단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면으로 본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재단은 신청 가능 본사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④재단은 이용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거래명세서의 제공요청을 받은 경우 2주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재단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기록·자료(거래명세서 포함)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다음 각호에 정한 기한내에 이용자에게 확인 및 제공하여야 한다.

1.전자적 장치를 통한 제공의 경우에는 즉시

2.제3항에 따른 서면 제공 방식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

제17조(통지방법 및 효력)①재단은 제11조제2항, 제13조제4항 및 제5항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재단이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이용자가 제18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에 따라 제2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가 이용자에게 연락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신고사항의 변경 등)①이용자가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재단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단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신고사항의 변경은 재단이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제19조(준수사항)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이용자는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비밀번호 유출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관리방법

2.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재단이 제공하는 절차와 방법

3.기타 재단이 정하는 사항

제20조(거래내용 녹음)재단은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직원과의 전화통화에 의한 거래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다만, 녹음된 내용은 해당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재단에 녹음된 내용의 청취를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비밀보장의무)①재단은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재단의 관리소홀로 인한 이용자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 시에는 재단이 책임을 진다.

제22조(약관의 변경)①재단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재단은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본사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한다

②제1항의 변경내용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경우 재단은 이를 전자우편 등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전까지 개별통지 한다. 다만, 기존 채무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③재단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④채무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재단은 약관을 본사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채무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3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①재단과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 및 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한다.

제24조(이의제기 및 협조)①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단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이용자가 재단의 본사 또는 재단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재단은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재단은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이용자는 제14조제1항에 정한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재단의 사고조

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준거법)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

[별첨3]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목적)이 약관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기본취지를 바탕으로 한국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전자금융(컴퓨터, 전화기 등. 이하 "서비스"라 한다)을 이용하는 고객(이하 "이용자"라 한다)간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자적 장치)이용자는 컴퓨터, 전화기, 기타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3조(서비스의 종류)재단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대출 및 신용보증 거래내역, 대출원리금 납부내역, 대출실행, 기타 재단이 정하는 거래 등이며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은 해당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안내한다.

제4조(이용신청 및 승낙)①이용자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이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1.단순조회서비스(대출잔액, 대출 원리금 납부내역 등)
- 2.기타 재단이 정하는 거래

②재단은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제반 사항을 검토한 후 전자적 장치를 통해서 서비스 이용을 승낙한다. 다만, 제1항의 단서에 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이용자 확인방법)재단은 서비스 이용 시 마다 공인인증서 암호가 일치할 경우 서비스이용자를 신청인 본인으로 인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6조(이용시간)서비스의 이용시간은 별표1에서 정한 바와 같으며, 서비스종류별 구체적인 이용시간은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내한다.

제7조(서비스의 취소)해당 서비스가 종료된 후에는 신청인은 이를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다.

제8조(서비스의 제한)12개월간 자금이체 이용실적이 없는 때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단, 조회서비스는 이용가능

제9조(서비스의 변경·해지 등)①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변경(비밀번호 변경 제외)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를 서면 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해 재단에 제출하여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재단은 이용자가 이 약관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통지한다.

- 1.타인의 명의 또는 인적사항을 도용한 경우
- 2.허위로 가입신청을 한 경우
- 3.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4.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사고사항의 신고)각종 비밀번호 누설 등 사고 발생시는 즉시 본사에 서면 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11조(약관변경)재단은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시행일 1개월 전에 이를 본사와 학자금포털 또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1개월간 게시하고,그 기간안에 이용자가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2조(준용규정)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법령, 전자금융거래 기본 약관 및 기타 해당업무의 각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1: 서비스 이용시간]

구분	평일	토요일	휴일(근로자의날 포함)
각종조회, 사고신고	09:00~23:00	불가	불가
대출실행	09:00~17:00	불가	불가
자동이체 등록	09:00~19:00	불가	불가

[별첨4]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약정서

수입인지
(생 략)

학자금대출거래약정서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용)

한국장학재단 앞

년 월 일

한국장학재단은 차주가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과 전자 금융서비스이용약관 및 이 약정서의 사본을 인터넷상 다운로드 또는 출력, 기타의 방 법으로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 이 약정서상 차주(이하 이 약정서상 “본인”이라 함은 차주를 말한다)는 각자 한국장 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 재단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및 “전자금융 서비스이용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대출의 성격과 조건, 상환원리금 산정 및 상환방법 등의 내용과 대출에 포함된 위험 및 대출약정 체결 방법, 특별약정 체결 내용, 신고의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의 의미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3. 본인은 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및 이 약정서를 전부 잘 읽고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각 사본을 출력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4. 본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 약정서에 확인을 한 때에는 약관 및 약정서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합니다.

차 주	성 명	(공인인증서확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제1조(거래조건)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거래방식이 수개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되는 “□”내에 “√”표시를 합니다.)

대출과목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거래구분	개별거래
자금용도	<input type="checkbox"/> (2013년도 1학기) 등록금		
거래조건	대출한도는 해당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이며, 본 사업 세부시행계획에 의한 심사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 약정 취소 처리됩니다. (정지조건부)		
대출기간	<input type="checkbox"/> 대출개시일로부터 대출원리금의 상환시기가 도래하고 그에 따른 상환의무가 완료된 때까지로 합니다. ※ 분할상환(원리금 등 포함)의 경우에는 납입응당일로 만기일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등	고정이율	연 (0)%	
지연배상금률	연체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연 ()% 연체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경우 연 ()%를 적용합니다.		
상환방법	졸업 또는 수료후 2년간 상환유예하고 상환유예기간 종료후 1학기분을 1년내내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월별로 상환하기로 합니다. ※ 재단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실행 및 지급방법	이 대출은 대출개시일에 전액실행하며, 등록금 해당금액은 학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기로 합니다.		
이자지급방법	<input type="checkbox"/> 최초이자 는 대출개시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그 후의 이자는 지급 한 이자의 계산 최종일 익일부터 ()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매월 납입일(단, 원금분할상환의 경우 그 분할상환일)에 지급합니다. ※ 재단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입일	(27)일 ※ 본약정 체결이후 납입일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평년 또는 윤년에도 불구하고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할부금의 계산	분할상환금의 계산은 원단위로 하며, 각 상환방법 또는 이자지급방법에 따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대출의 만기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만기일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되, 상환기일은 재단의 다음 영업일로 이연되며 이연기간의 이자는 약정이자로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2조(지연배상금) ① 이자, 분할상환금, 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 제6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때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③ 지연배상금의 계산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대출금액의 상환 등) 본인은 아래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금액을 재단에 곧 상환하기로 합니다.

1. 등록금납입 후 등록금이 인하여 대학으로부터 환급분이 발생한 경우 환급분 해당액
2. 본인의 휴학, 등록포기, 등록취소, 자퇴, 제적 등의 학적변동으로 인해 대학으로부터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반환되는 경우 반환분 해당액

제4조(신고사항 변경) ① 본인은 자퇴, 휴학 등의 학적사항,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 타 기관으로부터의 장학금 수령 또는 학자금대출사항, 이체 계좌번호, 기타 대출관련정보 등이 이 건 대출신청 시점과 비교하여 변경된 경우 즉시 재단에 신고하기로 합니다.

② 재단은 본인이 신고사항을 지체하거나 누락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5조(본인확인) ① 이 대출은 재단이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본인확인 후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그 대출은 본인에게 실행된 것으로 보고, 재단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그 대출로 인하여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재단은 본인의 대출조회 및 실행의 과정에서 입력한 내용을 이용하여 본인확인의 추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로 합니다.

④ 재단은 본인의 대출 조회 및 실행의 과정에서 입력한 내용을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기록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6조(이중지원의 방지) ① 본인은 본 대출과 함께 동일 학기에 다음 각 호의 학자금 지원사업의 지원(이하 “이중지원”이라 한다)을 받지 않고 있으며, 이중지원을 받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1. 행정안전부 등 관계 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 지원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대하여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
6. 그 밖의 재단이 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② 본인은 제1항의 확인사항이 재단 등에 의해 향후 사실과 다르게 밝혀질 경우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대출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거나 추가 대출을 제한하는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7조(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의 적용) 본 약정서에 추가하여 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 추후 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바에 따릅니다.

[별첨5]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 본인과 금융거래관련 계약 및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재단이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이하 '재단법') 제16조의 사업 및 학자금대출채권관리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아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조회 및 재단법 제50조 및 제50조의2제2항 각호에 따른 기관, 국가, 대법원, 관계행정기관(교과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과 병무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산하기관), 국군재정관리단,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재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장학법인, 금융회사(은행연합회 포함),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제공·이용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그 밖의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민간기부처, 재단업무협약기관, 업무위탁업체 등에게 조회·제공하며 재단이 학자금대출 및 동 대출의 연체에 대한 정보 등을 본인의 부모, 법정대리인, 본인 소속 또는 소속예정인 고등교육기관에 통지하는데 동의합니다.

* 금융거래라 함은 여신업무, 부수업무(사후관리 업무 등)와 관련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공통)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 제출 자료의 진위확인, 가족관계(부, 모 또는 배우자) 확인 및 장학대상자 선별 등 ■ 재단법 제50조의2 및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39조 중복 지원의 방지 등 ■ 재단법 제16조제4호에 따른 대학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통계 현황 조사·분석 ■ 분쟁 해결, 민원 처리 ■ 대출 이차지원 ■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수행 ■ 법령상 의무이행 등
수집·이용할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식별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개인대출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계약 이전 및 이후 재단으로부터 받은 대출 포함 ■ 채무보증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계약 이전 및 이후의 보증포함 ■ 금융거래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등), 거래일시, 상환정보,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학자금지원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자금대출(재단, 타기관 대출정보 포함), 장학금(재단, 타기관, 교내 장학금 정보 포함) ■ 기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국가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소득분위정보, 가구소득, 자산, 부채,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인정보, 차상위정보, 병역정보(입영 및 전역 등 병무이행 관련 정보), 등록금 정보, 고등교육기관의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부동산 정보,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용자 심사를 위한 정보(본인 및 보호자의 거주이력 정보, 농·어업 종사정보 등), 수능정보, 내신(학생부 등)정보, 고객이 제공한 정보(거주기간, 군필여부 등) 등 <p>※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p>
보유·이용 기간	<p>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학자금 지원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에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지원 종료 후에도 재단법 제16조(사업) 및 제50조의2(중복 지원의 방지),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p>
수집·이용	<p>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사</p>

동의 여부	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법정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을 통하여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p style="text-align: right;">(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고유식별정보 동의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p style="text-align: right;">(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금융거래 관계 설정·유지 및 장학금 신청·선정·지급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 style="text-align: right;">(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2.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법 제50조 및 제50조의2제2항 각호에 따른 기관, 국가, 대법원, 관계행정기관(교과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과 병무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그 산하기관), 국군재정관리단,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재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본인이 소속 또는 소속예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장학법인, 금융회사(은행연합회 포함),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제공·이용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그 밖의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민간기부처, 재단업무협약기관, 업무위탁업체 등 ■ 업무위탁업체에 대한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 재단은 수탁업체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
제공·조회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의 학자금지원심사 및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재단법 제50조의2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 중복 지원의 방지 등 ■ 재단법 제16조제4호에 따른 대학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통계 현황 조사·분석 ■ 업무위탁업체에 대한 제공 :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및 장학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경우로서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수행 ■ 법령상 의무이행 등
제공·조회 및 요청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법 제50조 및 제50조의2제2항 각호에 따른 기관 및 본인이 소속 또는 소속예정인 고등교육기관, 재단업무협약기관 등에게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개인대출현황(본 계약 이전 및 이후 재단으로부터 받은 대출 포함) ▶ 채무보증현황(본 계약 이전 및 이후의 보증포함) ▶ 금융거래정보(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상환정보,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학자금지원정보: 학자금대출(재단, 타기관 대출정보 포함), 장학금(재단, 타기관, 교내 장학금 정보 포함) ▶ 기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가구소득분위정보, 가구소득, 자산, 부채,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별명등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주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인정보, 차상위정보, 병역정보(입영 및 전역 등 병무이행 관련 정보), 등록금 정보, 고등교육기관의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부동산 정보, 농·어업 종사정보 등), 수능정보, 내신(학생부 등)정보, 고객이 제공한 정보(거주기간, 군필여부 등) 등 ▶ 법적근거: 재단법 제50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37조 및 제38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시행령」 제45조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p>본인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경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등에 의해 배우자(향후 배우자 포함)의 개인(신용)정보를 포함하도록 합니다.</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업체에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전자정부법」 제38조(공동이용 행정정보)에 따라 제공·조회되는 정보 <p>※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p>
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재단법 제50조의2(중복 지원의 방지) 등 장학금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제공·조회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p style="text-align: right;">(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고유식별정보 동의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p style="text-align: right;">(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금융거래 관계 설정·유지 및 장학금 신청·선정·지급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 style="text-align: right;">(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대출용)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에 필요한 정보 ■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재산보유 파악, 보전조치, 강제집행 등 ■ 금융사고 조사
수집·이용할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능력정보: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신용도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농어업 종사에 대한 전산정보 등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용자 심사에 필요한 정보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금융거래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금융거래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귀재단의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고유식별정보 동의여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금융거래 관계 설정·유지·조건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2.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대한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정보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개인신용정보 조회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업무위탁업체에 대한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위탁업체: 대출관련 안내 및 상담업체, DM 발송업체, 채권추심업체 등
제공·조회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제공·조회 및 요청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게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식별정보(국적,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 주소, 직업, 직장, 연락처 등) 및 가구소득, 자산, 부채, 금융거래정보, 상환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신용능력정보, 신용평가 등을 위한 정보 ▶ 법적근거: 재단법 제50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37조 및 제38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시행령」 제45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관리규약,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본인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경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등에 의해 배우자(향후 배우자 포함)의 개인(신용)정보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div>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제공·조회 동의 여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고유식별정보 동의여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금융거래 관계 설정·유지 및 장학금 신청·선정·지급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본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에 관해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첨6] 반환등록금의 상환위임 동의서

반환등록금의 상환위임 동의서

_____대학(교) 귀중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 취급하는 학자금대출을 받아 _____년도 학기에 등록을 필한 후 부득이한 사정(휴학, 자퇴, 제적, 기타)으로 학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기납부등록금 중 학업 중단으로 인해 반환되는 등록금은 학교가 본인을 대신하여 재단에 본인이 받은 학자금대출을 상환(부분대출의 경우에는 대출금을 우선상환하고 그 나머지 잔액을 본인에게 반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_____년 _____월 _____일

성명 : _____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_____ - _____

학교명 : _____

전공학과(부) : _____

[별첨7] 등록금반환금액의 이동예정 대학 등록 위임 동의서

등록금반환금액의 이동예정 대학 등록 위임 동의서

_____대학(교) 귀중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 취급하는 학자금대출을 받아 귀 대학 20__년도 __학기 등록을 완료하였으나, 복수합격으로 인하여 부득이 귀 대학 등록금을 반환받아 타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고자 합니다.

이에 귀 대학이 본인을 대신하여 반환등록금을 이동예정 대학 등록금 수납계좌로 입금하여 등록을 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_____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_____ - _____

전 화 번 호 : _____

이동예정대학 : _____

※ 첨부서류 : 이동예정 대학 등록금납입 고지서

[별첨8] 등록금반환금액 이용에 관한 서약서

등록금반환금액 이용에 관한 서약서

_____대학(교) 귀중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 취급하는 학자금대출을 받아 귀 대학 20__년도__학기 등록을 완료하였으나, 복수합격으로 인하여 부득이 귀 대학 등록금을 반환받아 타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인은 반환등록금을 수령하여 이동예정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할 것이며,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만일 등록금 납부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이동예정대학 :

※ 첨부서류 : 이동예정 대학 등록금납입 고지서

[별첨9] 신청인 서약서

신청인 서약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의 학자금대출 또는 장학금(이하 "학자금지원") 신청인으로서 신청 및 선정과정에서 다음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할 시 매학기 학자금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1. 학기별 가족정보 활용

본인은 동일학기에는 최초 학자금지원 신청한 가족정보를 재단의 모든 학자금지원사업의 소득분위 산정 등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학자금지원금 반환 동의

본인은 재단으로부터 받은 학자금지원금을 등록금 용도로만 사용하며, 부득이한 사정(휴학, 자퇴, 제적, 기타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학자금대출 상환 동의서」 및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 6조제2항에 준하여 산정된 반환기준에 따라 기 지원받은 학자금지원금을 재단으로 반환할 것에 동의합니다.

3. 학자금 이중지원방지 및 상환(반환) 서약

본인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학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또한 본인이 한 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수령하는 학자금지원금(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외부학자금 등)에 대해 즉시 상환 또는 반환할 것을 서약합니다.

<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

구분	종류
학자금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WEST 포함),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용자 타기관 학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분(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분(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분(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I, II 유형, 대통령과장학금, 대통령드림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국가연구장학금(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전문대학성적우수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등 정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민간장학재단, 기업, 대학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 장학금 등
이중지원해당 학자금지원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안전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학자금지원 업무수탁기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기타 학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의 직장 등으로부터의 기관 임직원 자녀 학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또는 후견인의 직장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학비 지원제도」에 의해 등록금을 지원 받는 경우
이중지원 예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장학금 등의 대가성 장학금 및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가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